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정 1996. 03. 01.
1차 개정 2006. 01. 05.
2차 개정 2014. 04. 18.
3차 개정 2015. 08. 1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학구적인 연구 활동 장려 및 권익 보호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 회원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로 한다.

제5조(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회의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기타 권익을 옹호 받을 권리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본회 회칙 및 결의 사항 준수 의무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원우회장 1인
2. 원우부회장 1인
3. 각 부 부장(기획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정보부장 1인)
4. 각 전공별 대표

제8조(고문) 본회는 각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두되, 대학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9조(임원의 선출) ① 원우회장은 원우회장에 임후보자 한 자를 대상으로 전공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원우부회장과 각 부장은 신임 원우회장이 선임한다.

③ 각 전공별 대표는 각 전공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우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좌하여 재정 및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장은 원우회 활동 제반의 담당 업무를 추진한다.

④ 각 전공별 대표는 원우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전공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전공대표자 회의에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총 재적 학생으로 구성하고 총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3이상이 회원 요구가 있을 때 총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원칙적인 문제를 의결한다.

② 전공대표자 회의는 전공별 대표로 구성하며, 회칙 개정 및 예산 심의, 결산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원활한 원우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공대표자 회의와 각 학기 과대표 회의를 분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공대표자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14조(목적, 사업)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장학사업

② 각종 연구발표, 실기발표 및 학술 강연회, 학술세미나 개최

③ 원우 논총 및 간행물 발간

④ 본회 및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5조(학사일정) 전공대표자 회의 의결로 본 대학원의 학사 일정 및 교육활동 추진, 대학원생의 복지증진에 관한 의견을 대학원과 대학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6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대학회계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